의 안 번 호	제 39 호
의결 년월일	1997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사 천 시 장 하 일 청
제출년월일	1997. 11 . 27 .

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9

제출일자 : '97. 11. .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1997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○ 지방세에 관한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한다.

○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3. 법적근거

지방세법 제3조(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)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입법예고

가. 예고기간 : 1997.10.28 ~ 11.10

나. 예고방법 : 일간신문 게재

다. 접수된 의견 : 없 음

사천시 조례 제　　호

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"적부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사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,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 설)	제14조의2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"적부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사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